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1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71,620,020	26,148,601
일반회계	738,756,639	22,162,699
특별회계	132,863,381	3,985,901
공기업특별회계	67,519,919	2,025,598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7,519,919	2,025,598
기타특별회계	65,343,462	1,960,30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592,030	467,761
군산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2,473,220	74,19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40,813	121,224
수질개선특별회계	49,000	1,47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4,237,732	127,13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106,000	3,180
주택사업특별회계	9,725,000	291,750
농공단지특별회계	1,323,670	39,710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2,587,746	77,632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848,200	85,446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35,000	1,0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41,000	16,230
도시개발특별회계	21,784,051	653,52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582,14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